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

[윤영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451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11. 15.

발 의 자 : 윤영희 의원

찬 성 자 : 장규권, 정순기의원

## 1. 제안이유

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·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.
- 다.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.
- 라. 예산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국민건강증진법」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3. 11. 16. ~ 11. 22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걷기”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.
2. “맨발걷기 산책로”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써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.

가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
나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

다. 탐방로, 산책로, 등산로,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
라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, 둘레길,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**제4조(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)**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
3.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**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맨발 보행로의 조성·확충 및 정비
2.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·관리
3.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
4.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
5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6조(정보망 구축)** ① 구청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예산의 사용)**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3. 9. 29.] [법률 제19293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**제6조의 5(건강도시의 조성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·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·개선하는 도시(이하 “건강도시”라 한다)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